

의안번호	2219604
의 퇴 인	최수진의원
회 답 일	2026. 7. 15.
추계번호	26C3148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45조의2 (장애인차별법률 지원센터의 설치· 운영 등)	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 자치도지사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이와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 ※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업무(제2항):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법률상담, 진정의 대리, 시정명령 신청의 대리, 소송대리 등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5조의2 (장애인차별법률 지원센터의 설치· 운영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
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
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
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

위탁 운영하고, 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

-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에 33억 5,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¹⁾
 - －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에 5억 1,400만원,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에 2억 5천만원, 전국의 총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에 25억 8,700만원 편성(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은 국고보조율 50%)
 - － 일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변호사를 채용하여 장애인학대·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·조사 등과 함께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

□ 그러나 안 제45조의2제3항은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운영될 해당 센터의 규모 및 재정소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²⁾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‘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’ 사업을 편성

2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재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,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사례가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